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단의 온라인 대출 신청 시스템에서 '자가진단표 사전 체크' 후 서류제출 - 현장기업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성 등 기업평가등급이 일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p>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년월일 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⑥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⑦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단, '유형2.채무조정'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⑨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⑪ 휴·폐업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⑫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한 경우 또는 동일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한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⑬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⑭ <유형1.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단,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적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⑮ <유형1.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 또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20년·'21년·'22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⑯ <유형1.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20년·'21년·'22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공불용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대표(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대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존 대출이 과다한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